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

- 검 토 보 고 -

▢ 제안이유

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인구 3만명 이상의 읍은 의원 1인을 증원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예산읍선거구가 2개로 분구되어 의원정수가 12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고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.

▢ 주요골자

○ 전문위원별 직급을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행정주사, 총무위원회, 사회산업위원회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함. (안 제3조제1항)

▢ 참고사항

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

○ 지방자치법 제50조,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

○ 충청남도시·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

○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

▢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설치 증설에 대한 전문위원등 의회사무기구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서

- 소관상임위원회 별 전문위원의 증원으로 인하여 충실한 안건심사와 전문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.